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0호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산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가구구성원이 중증장애 및 중증질환, 노인 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통장 등이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1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지원비용”이라 함은 지원 대상자의 지원업무에 <u>소요되는</u> 총 비용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필요한</u> -----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시장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략) 3.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정 4. <u>기타</u>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지원기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생략)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4. <u>그 밖에</u>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u>의한</u> 지원금품의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생략)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따른</u>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u>제6조의</u>	제9조(지원의 결정) ----- <u>제6조에</u>

현 행	개 정 안
<p>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 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따라-----제7 조에 따라----- ----- ----- -----.</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2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군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관 또는 회칙에 표기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8. “예술인”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군산지회”(이하 “군산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복지실태와 근로실태 조사를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군산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군산예총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생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강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④ 시장은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문화환경 취약지역은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개최
3.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4. 문화예술 행사, 공연, 전시, 경연, 강좌 등 개최
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예총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군산예총의 경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2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예술인 복지증진

제29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도시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1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2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1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3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조례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동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3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구장·군산시공도장”을 “축구장·군산시공도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군산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과 제3항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월명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월명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p>

별표 2중 월명체육관란 다음에 군산실내배드민턴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산실내배드민턴장	2시간당	2,000
-----------	------	-------

별표 2중 “어린이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70%를 징수함.”을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감면함.”으로 한다.

별표 5중 (월명체육관) 게시등 부착 및 입식광고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명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게시등 부착 및
입식광고물

제12조제2항 중 “수영장”을 “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96.01.12,2002.05.15,2004.07.30,2007.11.30, 2009.05.15, 2012.08.16>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주 경 기 장	우레탄트랙	체 육 경 기	75,000	50,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 육 이 외	105,000	70,000	
	인조잔디구장	체 육 경 기	75,000	50,000	축구경기는 1게임(2시간) 원칙 (초과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신설 2007.11.30>
		체 육 이 외	105,000	70,000	
야 구 장 <개정2004.07.30, 개정2009.05.15 개정2012.08.16>		체 육 경 기	50,000	40,000	· 야구경기는 1게임(4시간) 원칙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신설 2007.11.30>
		체 육 이 외	105,000	60,000	
테 니 스 장 (1면당) <개정2004.07.30>		체 육 경 기	15,000	10,000	·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 육 이 외	17,000	12,000	
월 명 체 육 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체 육 경 기	60,000	40,000	·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 주간(1회)	90,000	60,000	
		체 육 이 외	300,000	200,000	·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 주간(1회)	450,000	300,000	
족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10,000	5,000	· 2시간 기준
수송공원 축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 육 이 외	50,000	30,000	
생말공원 축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 육 이 외	50,000	30,000	
금강공원 축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 육 이 외	50,000	3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등록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신설2002.05.15>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2.05.15, 2003.05.31, 2007.11.30, 2012.08.16>

체 육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개 인(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육상트랙)	2시간당	300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	2,000	
야 구 장	“	2,000	
테 니 스 장 (1면당)	“	2,000	
월 명 체 육 관	“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	2,000	

-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감면함.
- 단체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함
- 월 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월 300,000원을 징수한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이하로 하며,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 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신설2002.05.15>

【별표 5】 <개정96.01.12,2004.07.30,2012.08.16>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에드벌룬 계양	1일 1개	30,000원 (1일초과 5,000원/1일)	
게시등 부착 광고물 (야구장, 주경기장)	건당 1,2m×10m 이내	5일 이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	• 삭제<2012.08.16>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04.07.30>
게시등 부착 광고물(야구장 외야펜스) <신설 2012.08.16>	건당 2m×8m 이내	1,000,000원 (당해년도에 한함)	
(월명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게시등 부착 및 입식 광고물	건당 1,2m×10m 이내	연간 1,000,000원 5일 이내 5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노점) 고정식 이동식	1일 개업소 1인 1일	m ² 당 1,000원 10,000원	차량포함 차량제외

제18조(손해배상)① (생략)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 (생략)

①(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4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7조 이차보전 지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이차보전은 년 2%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 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략</p> <p>② 이차보전은 년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차보전은 년 2%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5호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2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업비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사업비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6호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업”발전을 “산업”발전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를 “군산 시장(이하 “시장”이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입주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수익자”를 “자(이하 “수익자””로 한다.

제9조 중 “군산시(이하 시 라”를 “군산시(이하 “시”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를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추징하여야”를 “추가징수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양도와 대여 금지)”를 “(양도와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를 “(공동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정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 부담”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 라”를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유지보수비”를 “하며 유지보수비 및 부담금의”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계리하도록”을 “회계처리 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u></p>	<p><u>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경제력 증대 및 <u>공업발전을</u>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산업발전을</u>-----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u>지방산업단지</u>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u>군산시장(이하 시장</u> 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u>지방산업단지</u>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u>일반산업단지</u>-----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u> <u>라</u>----- <u>일반산업단지</u>----- -----.</p>
<p>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u>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행한다.</p>	<p>제4조(사업의 시행자) -----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u>----- ----- ----- -----.</p>
<p>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 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u>각호</u>의 비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u>입주자</u>가 부담한다.</p>	<p>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 -----<u>각 호</u>----- ----- ----<u>사업시행자</u>-----.</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u>제6조</u>의</p>	<p>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u>제6</u></p>

<p>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조에 따른----- ----- ----- -----.</p>
<p>②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p>	<p>② ----- ----- 자(이하 “수익자”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 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9조(설치) ----- ----- -----<u>군산시</u> (이하 “시” 라-----<u>심의위</u>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p>
<p>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10조(기능) ① -----<u>각</u> <u>호</u>-----.</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5. <u>그 밖에</u>----- -----</p>
<p>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p>② -----<u>보상업무는 「공공</u> <u>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u>에 ----- -----.</p>
<p>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② (생략)</p>	<p>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p>	<p>③ -----<u>위원에게</u>----- -----</p>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격) ① ----- ----- <u>각 호</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삭 제>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3. ----- <u>법령에 따라</u> ----- -----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삭 제>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 ----- <u>각 호</u> ----- ----- -----.
제18조(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분양계약) ① <u>제17조제2항에 따라</u>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② <u>제1항에 따라</u> -----

<p>체결시에는 분양대금(기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계약 해제) ① 시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제19조(계약 해제) ① -----제18조 제1항에 따른----- -----</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제18조제2항----- ----- -----</p>
<p>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p>	<p>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 ----제6조에 따른----- ----- -----각 호----- -----추가징수 하여야--.</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p>	<p>2.----- ----제18조제1항에 따른----- ----- -</p>
<p>3. 기타 확정 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p>	<p>3. 그 밖에----- -----</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p>	<p>② 제1항에 따른-----</p>

<p>정산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p>
<p>제22조(양도와 대여 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p>	<p>제22조(양도와 대여)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p>
<p>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삭 제></p>
<p>제23조(환매권의 유보) 시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 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p>	<p>제23조(환매권의 유보) -----제18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p>
<p>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p>	<p>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전의 경우만 해당한다.)</p>
<p>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p>	<p><삭 제></p>
<p>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p>	<p><삭 제></p>
<p>제24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p>	<p>제24조(소유권 이전) ① ----- ----- -----. -----제18조에 따른----- -----제21조에 따른----- -----.</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 -----.</p>
<p>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 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 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25조(공동부담금) 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 ----- -----.</p>
<p>②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 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 -----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 라----- -----.</p>
<p>③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 책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 ----- -----제18조에 따른-----하 며 유지보수비 및 부담금의--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 -----.</p>

<p>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u>계리하도록</u>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 ----- ----- <u>회계처리 하도록</u>----- -----.</p>
--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7호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산물 연구·가공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가공시설"이란 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공장 및 냉동 창고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명칭·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이하 "수산물 거점단지"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군산시 내항2길 296(해망동)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구분)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판물류시설"은 위판·물류동에 있는 시설(위판장, 가공공장 1개소, 냉장·냉동창고 등)

2. "연구가공시설"은 연구·가공동에 있는 시설(가공공장 6개소, 지원사무소, 연구/지원센터, 연구사무실 등)

제5조(사업) 수산물 거점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의 지원
2. 수산물가공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3. 수산가공품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4. 식품위생·안전시설을 통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제6조(운영관리) 수산물 거점단지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판·물류동, 연구·가공동을 각각 분리하여 수산관련 지구별·업종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수산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시장은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수산물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및 기간) ①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산물 거점단지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시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수익 허가자는 사용·수익허가 및 갱신 할 때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료가 연체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사용·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수산물 연구·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위판물류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제4조제2호에 따른 연구가공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5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3개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이 그 밖에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운영관리비 등을 징수한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동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8호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69호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 및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

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산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92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자
-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생략)</p> <p>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자.</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하는 중소도시 재산범위특례 이하의 재산가액을 보유한 자.</p> <p>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다음 각목의 경우</p> <p>가.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p>	<p>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자</p> <p><삭제></p> <p><삭제></p>

는 가구
 나.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
 다.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라.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가구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사. 위의 각 조건을 충족하고 가구내 금융자산 초과자중 과다채무로 부채를 공제하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10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93호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관리자 : 수도사업소장
2.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3. 수입원 : 하수행정계장
4. 지출원 : 하수행정계장
5.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6.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

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